■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23호 서식] <개정 2026.6.5.>

"창봉투용 사업장소재지란"

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

○ 수신자

상　　호			
성　　명		사업자등록번호	

○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따른 안내말씀

귀하는 직전 연도(20　년)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(면세공급가액 포함) 합계액이 ○○○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, 20　.　.　.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근거규정 :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

○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○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.

○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　.　.　.부터 계속하여(그 이후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○○○원 미만이 된 경우를 포함)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,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.

○ 위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기 바라며,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(☎126-①-②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○ ○ 세 무 서 장 (직 인 생 략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